

주간 규제 정보

Vol. 400

2022. 05. 30 ~ 2022. 06. 05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 3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자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고시 3
3. USB-C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 국가표준 가속화 4
4.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5
5.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5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6.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 알림 5
7.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일부 개정 알림 6
8.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7
9. [보도]국립전파연구원-관세청,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7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10.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8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11.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1
12. 미국 워싱턴 주, 과불화합물(PFAS)이 함유된 5종의 식품접촉용 포장의 제한 규제 시행 12
13. 베트남, 제한물질에 대한 라벨링, SDS 및 보고 규칙 개정 입법예고 13
14. 태국,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5가지 필수 표준 승인 14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5. 미국 손소독제 시장 동향 15
16. 말레이시아 로봇 청소기 시장 동향 19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

- 관세청-산업부, "가정의 달" 대비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실시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하였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4~4.29,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것이다.

*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점 적발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 순이다. 금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되었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0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자전거)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 「안전확인 안전기준 이륜전자전거 부속서 40」의 제3부 전자전거의 안전기준 중, 모터정격출력 상향

(350W→500W)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특구사업('19.8~21.11, 전남 영광)에서 안전성이 실증되어 개정코자함

2. 주요 개정내용

-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출력을 500W이하로 개정*
 - * (개정 전)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출력은 350W이하이어야 한다(4.2.2)
 - (개정 후)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출력은 500W이하이어야 한다(4.2.2)

3. 붙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USB-C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 국가표준 가속화

- 삼성·엘지 등 적용계획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 31일「전자제품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USB-C)」의 국내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주도의 표준기술연구회에서는「USB-C」로 통칭하는 커넥터·충전·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USB-IF에서 제정한 USB-C 표준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표준으로 채택

IEC 62680-1-2 : 2021(USB 전원 스펙), IEC 62680-1-3 : 2021(USB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등 이번 회의에서 국가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삼성·엘지 등 주요 기업별 USB-C 적용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휴대폰,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최근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고 있으며 요구되는 데이터 속도, 전원 용량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IEC는 작년 3월 최대 100W까지 전력공급이 가능한 USB-IF 표준을 IEC표준으로 도입·제정하였는데, 동 표준을 올 6월에 최대 240W까지 용량을 확대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USB-C 표준기술연구회」의 한문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센터장은 USB-C관련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활동 경과, ▲IEC 기술위원회 동향, ▲EU 입법화 세부사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였다. 연구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엘지전자, TG 삼보, SK매직은 각 회사의 제품별 USB-C 적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국제표준 동향에 맞추어 적극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 애플코리아와 HP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도 참석하여 동향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유된 현황과 의견을 반영하여 IEC 표준을 부합화한 국가표준(KS) 3종을 오늘 8월에 우선 제정하고 가이드라인도 10월에 개발 완료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앞으로 더 다양한 전자제품에 USB-C 타입이 적용되어, 환경보호는 물론 여러 개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출처([국가기술표준원](#))

5.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75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6.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 알림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2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국제표준 개정사항(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3m 방사성 방해 기준 신설) 반영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이 KS로 전환됨에 따라 인용 시험방법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m 방사성 방해 기준을 신설*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5조 제1항(별표 1), 제5조 제2항(별표 2), 제8조(별표 5), 제6조제1항(별표 3), 제9조(별표 6), 제12조(별표 9), 제15조(별표 12))

* ①주거, 상업 및 경공업에서의 일반환경, ②산업 환경에서의 일반환경, ③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이용기기류, ④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⑤조명기기류, ⑥무선설비기기류, ⑦멀티미디어기기류

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주파수 확대,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시험 레벨 명확화 등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14조(별표 11))

다. 전자파적합성 별표 시험방법(KN)이 KS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 본문의 인용 시험방법 현행화 및 자구수정 등(안 제6조(별표3) ~ 제22조(별표 19))

3.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붙임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문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요약문 1부.
2.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문(제2022-12호) 1부.
3. 신규조문대비표 1부. 끝.

출처([국립전파연구원](#))

7.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일부 개정 알림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4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 2021.2.8.)의 일부 국가표준을 개정판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제4조제19항, 제4조제23항)

3. 참고사항

공고 전문은 붙임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요약문 1부.
2.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전문(제2022-40호) 1부.
3. 신규조문대비표 1부. 끝.

출처([국립전파연구원](#))

8.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1호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전파환경조사시 현재 건수 산정에 측정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민원인이 연속측정 요구(새벽, 야간 또는 12시간, 24시간 등)를 할 경우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건수 산정에 측정시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환경조사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1일(8시간)의 근무시간 중 현장측정을 위한 준비시간 2시간(이동, 설치 등)을 제외하고 1건당 연속측정시간을 최대 6시간으로 정하여 건수 산정 근거를 구체화(안 제5조제1호)

나. 제5조제1호 개정에 따른 전파환경조사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붙임

1.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1호) 전문

출처(국립전파연구원)

9. [보도]국립전파연구원-관세청,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 인천, 부산세관 등에서 협업검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6월 29일 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 ① 해당 기자재가 다른 기자재에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② 다른 기자재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기준

○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21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다.

-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차단하여 국내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공동>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책임자	과 장	정기섭 (042-481-7830)
		담당자	서기관	김인순 (042-481-7841)

출처(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10.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 식약처 소관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29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소관 7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법안명(약칭)	주요 내용	시행일
수입식품법	■ 해외직구 식품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공포후 1년
	■ 우수수입업체 등록대상을 식품 등에서 축산물까지 확대	공포후 6월
	■ 회수명령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공포후 1년
식품위생법	■ 식품용 용기의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및 절차 마련	공포후 6월
	■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근거 마련	공포일
약사법	■ 의약품 GMP 관리기준 강화 * GMP 적합판정제도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출입 근거 등 마련	공포후 6월
	■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 근거 마련	공포후 6월
식품안전기본법	■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의견취절차 예외 근거 마련	공포후 3월
실험동물법	■ 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 등 등록 : 임의취소 → 당연취소	공포후 6월

법안명(약칭)	주요 내용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처분 받은 영업자의 등록 제한 : 2년 → 1년 	공포일
마약류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이양 : 시도 → 시군구 	공포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공포후 6월
시험검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재검사) 시험, 성적서 발급 근거 마련 	'22.7.28.

< 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을 강화합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①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②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① 해외직구 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합니다.

② 또한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을 식품 등 수입자에서 축산물 수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축산물 수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자체 위생관리를 한 후 신속하게**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수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현지실사 후 등록하는 제도(「수입식품법」제7조)

** 인센티브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우수수입업소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수입신속통관 신청이 가능해짐

<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합니다. >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①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재활용 용기를 생산하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절감하는 한편, ②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재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① 그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가열·화학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수·선별·분쇄·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화학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가열·화학 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정제(불순물 제거)한 후 정제된 원료로부터 다시 중합하여 재생한 원료

물리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

② 또한 섭취량 등 변화로 이전에 설정한 식품의 기준·규격을 다시 평가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변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통 의약품의 품질향상을 추진합니다. >

□ 「약사법」 개정으로 ①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②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③GMP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등 마련 ④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된 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관리되도록 하는 체계

① 현재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GMP에 적합*하다는 식약처의 판정을 받도록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습니다.

* GMP 적합판정 : 식약처장이 완제 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의약품 제조소가 GMP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급한 증서(유효기한 3년)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판정 취소, 징벌적 과징금 부과,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되도록 제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③ 또한 GMP 조사·평가 업무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GMP 교육·훈련 이수자를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출입·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④ 아울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 등

□ 그 외 ①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예외 근거 마련(「식품안전기본법」) ②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 등록 시 당연 취소 근거 마련(「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③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이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④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도입에 따른 확인검사 실시·성적서 발급 근거 마련(「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①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 금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현행) 임의취소 → (개정) 당연취소

- 아울러 등록취소 받은 자는 현재 2년이 지나야 새롭게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으로 1년이 지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맞게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을 제외했습니다.

④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영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 영업자 생산 제품의 기준 적합 여부를 위탁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인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를 정함(「식품위생법」개정 '21.7.27)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기용기	(043-719-1501)
		담당자	사무관	임창근	(043-719-1511)
<시험 검사법>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대규	(043-719-1801)
		담당자	사무관	조우재	(043-719-1805)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 본법>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대원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김홍태	(043-719-2011)
<수입 식품법>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성옥	(043-719-2170)
		담당자	사무관	권혁승	(043-719-2162)
<약사법>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은희	(043-719-2610)
		담당자	사무관	한연경	(043-719-2620)
<실험 동물법>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영진	(043-719-1856)
		담당자	사무관	김지애	(043-719-1861)
<마약류 관리법>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일수	(043-719-2808)
		담당자	사무관	박미영	(043-719-2801)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11.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2년 4월 29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본 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나.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4-0001057>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2. 미국 워싱턴 주, 과불화합물(PFAS)이 함유된 5종의 식품접촉용 포장의 제한 규제 시행

미국 워싱턴 주는 과불화합물(PFAS*)가 함유된 5종의 식품 접촉용 포장의 판매를 추가적으로 제한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생태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PFAS 대체제에 대한 위해성 평가(AA**)의 결과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화합물을 확인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 위해성 평가는 5월 13일 발표되었습니다.

*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PFAS alternatives assessment

2024년 5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본 제한조치는 대체물이 존재하는 경우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식품 접촉용 포장을 점진적으로 퇴출하는 2018년부터 발효된 관련 주 법령의 추가 조치로 시행되게 됩니다.

본 제한조치에 적용되는 5종의 식품 접촉용 포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 포장용 가방과 소매(Bags and Sleeves)
- 원형 그릇(Bowls)
- 트레이와 같은 평평한 형태의 그릇(Flat serviceware, such as trays)
- 상부 개방형 용기(Open-top containers)
- 밀폐 용기(Closed containers)

워싱턴 주 생태국의 AA에 따르면 PFAS 함유 식품접촉용 소재의 잠재적인 대체품에는 고밀도 용지, 점토 코팅, 왁스 코팅, 폴리락트산 코팅, 폴리락트산 폼, 알루미늄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PFAS 기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내수성과 내유성을 지니며 비용 측면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에 발간된 1차 AA에서는 이러한 대체품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메릴랜드,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등 다른 미국 주에서 광범위하게 향후 몇 년 이내로 PFAS 함유 식품접촉 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와 유사한 법안이 콜로라도와 하와이 주에서도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pps.ecology.wa.gov/publications/documents/2204006.pdf>

<https://apps.ecology.wa.gov/publications/documents/2204007.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3. 베트남, 제한물질에 대한 라벨링, SDS 및 보고 규칙 개정 입법예고

지난 4월 28일, 베트남은 제한물질 면허, 라벨링, 관리일지 및 연간보고 기한에 대한 규칙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으며, 6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이 승인되면 변경 사항은 해당 국가의 기존 화학물질법인 Decree 113/2017/ND-CP에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MoIT*)가 4월 28일에 발행한 회람 초안은 시행령 No. 32/2017/TT-BCT에 규정된 몇 가지 요건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제안 중 핵심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학물질법에 명시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부록 9의 지침에 따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Safety Data Sheets

부록 9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초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업계의 연례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1월 15일에서 2월 15일로 변경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혼합물의 경우 최대 농도가 0.1%인 유해한 화학 성분을 나열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부록 2(제한물질 목록)에 기재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함량에 관계없이 모두 나열하여야 합니다. 초안이 승인되면 제한 물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개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91071/vietnam-considers-changes-to-labelling-sds-and-reporting-rules-for-restricted-chemical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4. 태국,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5가지 필수 표준 승인

태국 산업표준연구소(TISI*)는 식품접촉물질(FCMs*)과 관련된 5가지 필수 표준을 발표했으며, 이는 1월 3일부터 발효됩니다.

*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 Food Contact Materials

4월 8일 Royal Gazette에 게시된 표준은 다음의 기존 표준을 개정하고 대체합니다.

- I. 식품용 플라스틱 기구 Part 1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비닐알코올(PVAL) 및 폴리메틸펜텐(PMP) - TIS 655 Part 1-2553 (2010)
- II. 식품용 플라스틱 기구 Part 2 - 폴리염화비닐,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미드 및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 TIS 655 Part 2-2554 (2011)
- III. 식품용 플라스틱 기구 Part 3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및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 TIS 655 Part 3-2554 (2011)
- IV.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 Part 1 - 재가열용 - TIS 2493 Part 1-2554 (2011)
- V.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 Part 2 - 단일 재가열용 - TIS 2493 Part 2-2556 (2013)

위 표준은 FCM 기구 및 용기에 허용되는 플라스틱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성분의 전이량을 지정합니다.

○ 용출시험-I

#	시험법	용매	PE (mg/L)	PP (mg/L)	PS (mg/L)	PET (mg/L)	PVAL (mg/L)	PMP (mg/L)
TIS 655 Part 1-2553 (2010)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증류수	10	10	10	10	10	10
		증발 잔류물	4%초산	30	30	30	30	30
	증류수		30	30	30	30	30	30
	20% 알코올		30	30	30	30	30	30
	n-Hapta ne		150* 30**	150* 30**	240	30	30	120
	중금속	4%초산	1	1	1	1	1	1
	안티몬		-	-	-	0.05	-	-
게르마늄	-		-	-	0.1	-	-	

* 섭씨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경우

** 섭씨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경우

○ 재질시험-I

#	시험법	PE (mg/kg)	PP (mg/kg)	PS (mg/kg)	PET (mg/kg)	PVAL (mg/kg)	PMP (mg/kg)
TIS 655 Part	납	100	100	100	100	100	100
	카드뮴	100	100	100	100	100	100

1-2553 (2010)	휘발성물질 (스틸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 벤젠 및 n-프로필벤젠 의 합)	-	-	5000* 2000**	-	-	-
------------------	--	---	---	-----------------	---	---	---

* 섭씨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경우

** 섭씨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경우, 단 스틸렌과 에틸벤젠의 양은 각각 1,000mg/kg을 초과해선 안된다.

기업은 시행일까지 제품이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품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에는 라벨과 포장에 적합성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적합 마크가 없는 제품은 시장 출시 또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적합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마크가 있는 제품은 부적합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90282/thailand-approves-five-mandatory-standards-for-food-contact-material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5. 미국 손소독제 시장 동향

- 개인 위생에 대한 관념 변화로 손소독제 시장 2022년 6.8% 성장 전망
- 미국 식약청(FDA)에 정식 제조 업체 등록 필수

상품명 및 HS Code

손소독제(살충제·살서제(취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HS code는 3808.94다.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 IBIS월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손소독제 시장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1년에만 10.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물량 부족으로 제조사에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며 생산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부족한 공급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제조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일반의약품 제조업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도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가 2021년 12월 지침을 철회했다.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음에 따라 손소독제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2-2026년 미국의 손소독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3.8% 상승하여 2026년 674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손소독제 시장의 규모 및 전망>
(단위: US\$ 백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6.2	50.5	55.8	59.6	62.1	64.0	65.7	67.4

[자료: IBIS World]

IBIS World 의 조사에 따르면 손소독제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쉽게 소비되고 있으며, 출퇴근, 대면수업, 외출 등 야외활동이 늘면서 휴대용 사이즈의 판매가 늘고 있고 있다. 또한 호텔, 식당, 병원 등에서 비치하기 시작하면서 대용량, 일회용 제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상품군을 세분화하고, 향 또는 보습효과를 추가하는 등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젤, 티슈, 스프레이 등의 제형으로 제품을 출시해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다. 특히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코올 성분이 없는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일회용 사이즈의 손소독제(좌), 티슈형 손소독제(중), 스프레이형 손소독제(우)>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미국 손소독제의 수입액은 2021년 기준 45억 7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팬데믹 이후 물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점유율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일본의 점유율은 크게 상승하며 2021년 1위를 차지한 반면, 2020년에 30%를 넘게 점유했던 중국의 점유율은 다소 하락했다. 2021년 미국 손소독제 수입시장 점유율 1위는 일본으로 전체 수입 시장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21.5%), 독일(10.7%), 캐나다(9.1%)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1.8%의 점유율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 6위(5.18%)까지 올라갔으나 하락했다.

<미국 손소독제의 수입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수입액			비중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전체	2,761	4,921	4,578	100.0	100.0	100.0	
1	일본	625	1,067	1,399	22.6	21.7	30.6
2	중국	374	1,580	984	13.6	32.1	21.5
3	독일	425	407	488	15.4	8.3	10.7
4	캐나다	361	474	415	13.1	9.6	9.1
5	멕시코	92	315	178	3.3	6.4	3.9
6	프랑스	120	122	154	4.3	2.5	3.4
7	네덜란드	98	86	125	3.6	1.7	2.7
8	영국	82	78	95	3.0	1.6	2.1
9	스위스	39	42	91	1.4	0.9	2.0
10	한국	84	255	81	3.0	5.2	1.8

[자료: Global Trade Atlas(HS code 380894 기준)]

경쟁 동향

미국 손소독제 시장은 고조(Gojo Industries Inc)와 비존(Vijon Laboratories) 양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손소독제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는 고조가 보유한 퓨렐(Purell)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장을 24시간 가동하여 생산량을 증대한 바가 있다. 해당 기업의 대표는 2021년 3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500명의 인력을 충원했으며, 전세계 리소싱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또한, 과거 우리 기업의 10년치 투자금인 4억 달러를 지난 한 해 동안 투자했다.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과 달라져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 될 것으로 내다 본다”고 말했다. 고조는 사업을 다각화하고 항박테리아 비누, 수술용 스크럽, 가정 및 산업용 세제 등을 출시하고 있다.

<퓨렐의 제품>



[자료: gojo.com]

시장 점유율 2위 브랜드는 비존의 점엑스(Germ-X)로, 손소독제와 소독용 물티슈(Sanitizer wipe)가 주력 상품이다. 비존사는 2021년 7월 폭스17과의 인터뷰에서 “테네시주에 450만 달러를 투자해 시설을 증설했으며, 이로 인해 매일 3백만 병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존은 점엑스 외에도 마운틴 폴스(mountain Falls), 스완(Swan) 등의 브랜드로 구강청결제, 아기용품, 비누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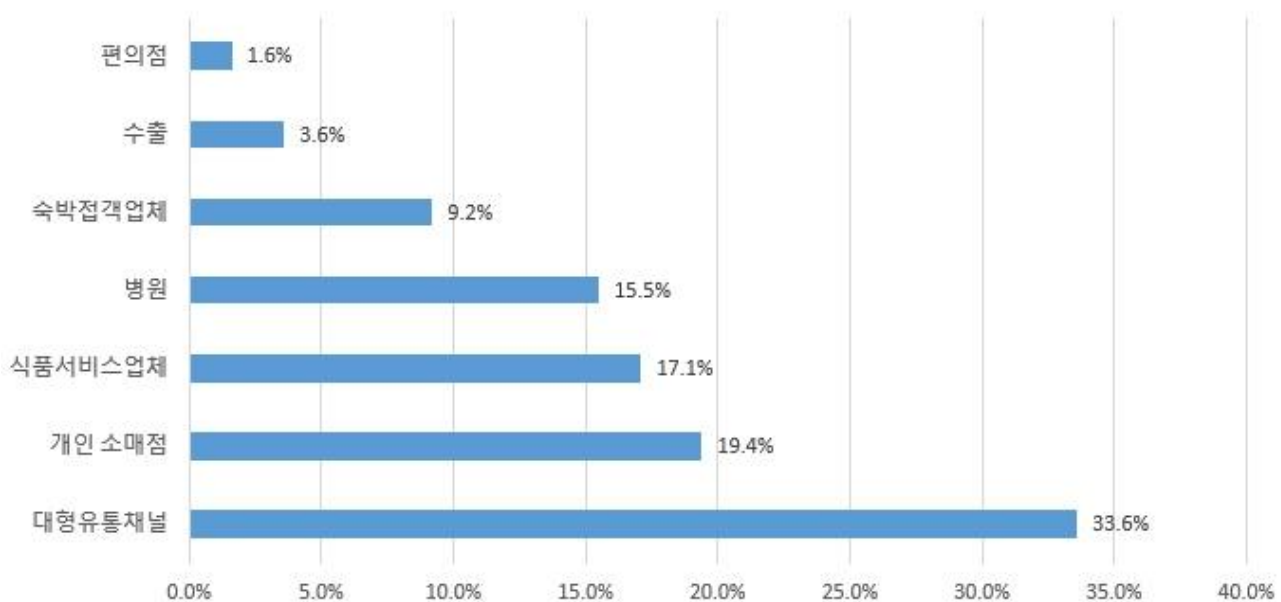
<점엑스의 제품>



[자료: vijon.com]

주요 판매처(유통구조)

IBIS월드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손소독제는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같은 대형유통채널에서 33.6%, 자영업 형태의 소매점 19.4%, 식품서비스업체 17.5% 순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손소독제 유통 현황>
(단위:%)

[자료: IBIS월드]

관세율 및 인증

미국 손소독제(HS code 380894 기준)의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 5%가 적용되나 한국산 제품은 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산 제품의 경우 미국의 대중 301조에 의해 25%의 추가 관세(list3)가 부과된다.

FD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임시로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철회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

비가 필요하다. 손소독제는 의약품(OTC Drug)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장 및 시설 등록, NDC Labeler Code, Drug Listing 등이 요구된다. 또한 28가지 부적격 성분(ineligible active ingredients)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FDA 규정에 맞는 라벨링이 필요하다. 상세 규정은 다음 링크에서 검색이 가능하다.([FDA 라벨링 관련 규정 링크](#))

시사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더라도 손소독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개인 위생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졌고,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FDA가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손소독제 제조 기준을 다시 강화한 만큼 관련 업체는 FDA 기준 통과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피부에 닿는 의약품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인증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전문 시험 기관 등을 통해 금지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또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 친환경 용기, 식물 추출 원료를 사용한 제품 등에 대한 출시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점을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자료: IBIS 월드, CNBC, Fox17, 미식품의약품국 및 KOTRA 뉴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6. 말레이시아 로봇 청소기 시장 동향

시장 동향

코로나19 이후 청소 및 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로봇 청소기를 비롯한 진공 청소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 가전 제품에 대한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로봇 청소기의 경우 청소, 걸레질, 소독 등 멀티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효율적임에 따라 시장 성장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로봇 청소기 판매 가치는 2017년 2,240만 MYR에서 2021년 2,520만 MYR으로 지난 5년간 12.5% 증가했으며, 금년도에는 1.6% 성장한 2,560만 MYR 규모의 판매가치를 지닐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진공 청소기 판매 규모>
(단위 : MYR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 예측
진공 청소기	170.0	181.9	193.0	206.7	222.0	233.4
로봇 청소기	22.4	23.4	24.8	24.9	25.2	25.6
총합	192.5	205.3	217.8	231.6	247.2	259.0

[자료: 유로모니터]

수입동향, 수입규모

<말레이시아 수입 규모 (HS CODE : 850811)>
(단위 : US\$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수입	24.3	25.4	18.1	29.7	51.2
% 증가율	76.0	4.6	-28.7	63.6	72.7

[자료: Global Trade Atlas]

말레이시아 진공 청소기 수입은 2020년 2,970만 달러에서 2021년 5,1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7%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약 110.7%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수입 순위 (HS CODE : 850811)>
(단위 : US\$ 백만)

	국가	US\$ 백만			% 비중			2020년 대비 2021년 변화 비중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1	중국	14.29	26.36	47.45	78.81	88.84	92.63	80.04
2	베트남	1.08	1.68	1.32	5.96	5.66	2.58	-21.38
3	독일	0.51	0.07	0.49	2.79	0.25	0.96	561.39
4	영국	0.12	0.01	0.33	0.66	0.02	0.64	5,099.17
5	대한민국	0.43	0.10	0.29	2.38	0.33	0.57	201.49
6	홍콩	0.01	0.09	0.23	0.08	0.30	0.44	149.54
7	인도	0.35	0.20	0.19	1.93	0.67	0.37	-5.25
8	필리핀	0.20	0.10	0.17	1.08	0.32	0.34	79.61
9	네덜란드	0.00	0.00	0.17	0.01	0.01	0.32	5817.99
10	미국	0.02	0.01	0.14	0.13	0.03	0.27	1251.91

[자료: Global Trade Atlas]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말레이시아 전체 청소기 수입의 92.6%를 차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약 4,750만 달러로 전년대비 80% 증가하였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진공청소기를 다섯 번째로 많이 공급하는 국가로 지난해 수입금액은 201.5% 증가한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쟁 동향

말레이시아 내 로봇청소기 경쟁은 매우 심한편이며, 특히 중국기업들이 시장내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로봇 청소기 시장은 주로 ECOVACS, iRobot, Samsung과 같은 주요 업체와 Khind 및 HETCH와 같은 현지 브랜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로봇청소기 제조사인 아이로봇은 2019년 말레이시아에 제조공장을 설립해 Roomba 600 시리즈 모델을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로봇청소기 주요 제품 리스트>

상품명	기업명	가격 (MYR)
Ecovacs Deebot X1 OMNI Robot Vacuum Cleaner 	Ban Leong Technologies Sdn. Bhd.	5,999
iRobot Braava Jet M6 Robot Vacuum 	Visionary Solutions Sdn. Bhd.	2,999
Samsung Jet Bot+ Robot Vacuum Cleaner with LiDAR Sensor 	Samsung Malaysia Electronics (SME) Sdn. Bhd.	2,999
NEATO Robotic Vacuum Cleaner D4 Connected 	Corvan Asia Sdn. Bhd.	2,898
Panasonic MC-RSC10KV47 Robotic Vacuum Cleaner Mini Rulo 	Panasonics Malaysia Sdn. Bhd.	2,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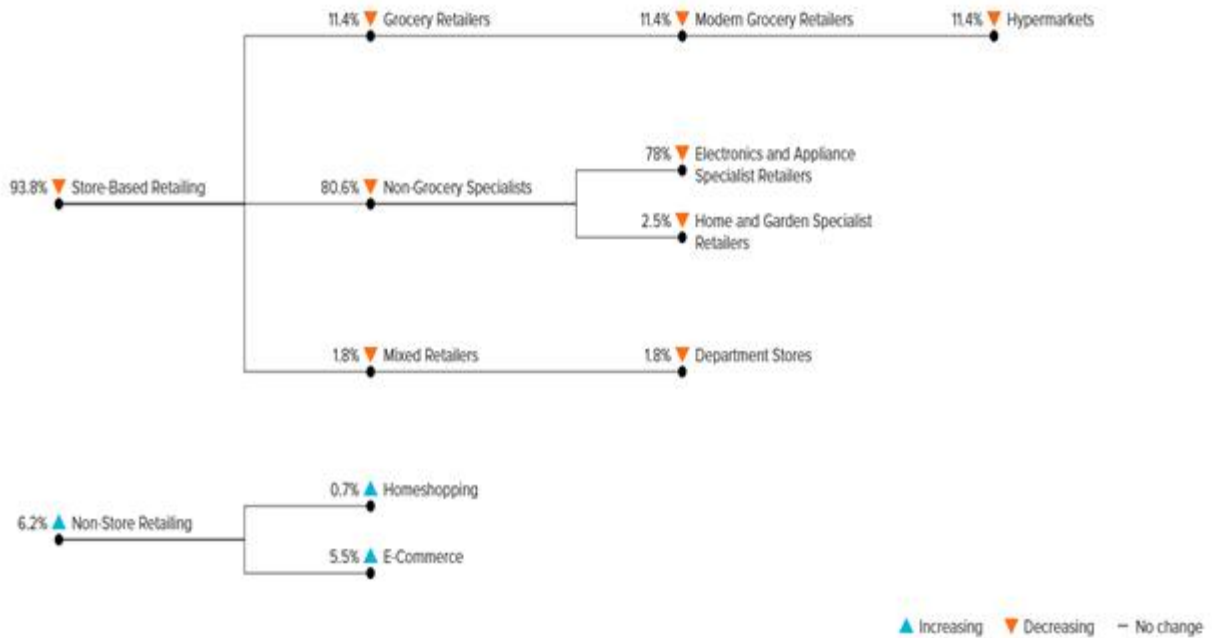
		
<p>Xiaomi Mi Robot Vacuum-Mop 2 Lite White</p> 	<p>Xiaomi Malaysia Sdn. Bhd.</p>	<p>799</p>
<p>ILIFE L100 LDS Laser Navigation Smart Robot Vacuum Cleaner</p> 	<p>Ilife Technology Co., Ltd.</p>	<p>999</p>
<p>Khind Robotic Vacuum VC9X6A</p> 	<p>Khind Marketing (M) Sdn. Bhd.</p>	<p>643.90</p>
<p>HETCH Sweep & Mop with UV Robot Vacuum Cleaner RVC-1409-HC</p>	<p>In & Ex Holdings Sdn. Bhd.</p>	<p>299</p>

		
<p>Samu Giken 3 in 1 Robotic Vacuum Cleaner with App Control - RVCOB8(S)</p> 	<p>Samu Giken Malaysia Sdn. Bhd.</p>	<p>149.90</p>

[자료: 각 기업별 온라인 사이트, 쇼피]

유통구조

<말레이시아 진공 청소기 유통구조>



[자료: 유로모니터]

대부분의 수입 로봇 청소기는 현지 회사 또는 유통업체를 통해 매장 기반의 소매업체인 Senheng, Best

Denki, ESH, Harvey Norman, TBM 및 대형 슈퍼마켓과 같은 전자 제품 업체로 전달된다.

Shopee, Lazada와 같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WOWSHOP, Go Shop과 같은 홈쇼핑 채널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격 경쟁 우위를 통해 로봇청소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인 상황이다.

관세, 수입인증

진공 청소기 (HS CODE 850811)는 말레이시아 관세 명령 2017 및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CEP)에 따라 20%의 수입 관세가 적용되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따라 수입관세가 5% 적용된다. 판매세의 경우 10%의 판매세(SST)가 적용된다.

가정용 로봇 청소기를 포함한 진공 청소기는 말레이시아에서 규제되는 전자 장비 중 하나이다. 1994년 전자 기기 규정에 따라 현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규제 대상 전자 제품을 제조, 수입, 전시, 판매하기 전에 규제 기관인 에너지 위원회(ST)로부터 승인 증명서(CoA)를 받아야 한다. 또한, 로봇 청소기는 말레이시아의 인증, 검사 및 시험 기관인 SIRIM (<https://www.sirim-qas.com.my/our-services/product-testing>)에서 수행하는 위탁 테스트를 받거나 제품 인증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https://www.sirim-qas.com.my/our-services/product-certification/product-certification-scheme>)

CoA의 모든 신청은 Dagang Net Technologies Sdn. Bhd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전자 허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https://epermit.dagangnet.com.my/>)

ST는 테스트 보고서와 함께 모든 필수 서류 및 수수료까지 납부하였다며 CoA를 발행한다. 위탁시험을 통과한 제품은 SIRIM-ST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에너지 위원회(ST)의 전기 장비 승인 및 COA 신청 지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t.gov.my/en/contents/files/download/158/Guidelines_for_the_Approval_of_Electrical_Equipment_2018.pdf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금년도 4월 1일부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국경을 다시 열었으며 현재 모든 경제 부문이 재개되고 있다. 개인 위생 청결 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직장에서의 복귀와 점점 더 바쁜 생활로 인해 로봇 청소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청소기의 현지 유통업체 중 하나인 Ban Leong Technologies Sdn Bhd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로봇 청소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로봇청소기 제품중 AI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 청소, 대걸레 청소, 물 보충, 열풍 건조 등을 수행하는 제품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은 여전히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강력한 세균/박테리아 박멸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점점 더 로봇 청소기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유로모니터, Global Trade Atlas, 쇼피, 각 기업별 온라인 사이트,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모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